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4호

「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2월 13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급변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추세에 따라 의정업무의 추진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, 별도의 보좌 인력이 없는 의원들의 조례안 입안 및 의안 심사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적 사안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상주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.
- 나.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(안 제2조)
- 다.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 대상 및 정원을 규정(안 제3조)
- 라.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를 규정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

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